

가족구성원 모두의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



玉先花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지구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지난 20세기에 성취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가족 역시 과거에는 당연시 되었던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출산율의 격감, 이혼율의 급증 현상을 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은 가족이라는 기초 생활단위 속에서 성장하며,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결혼의 목적이 자녀의 출산에 있었고, 부계 가문의 영속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과거에 혼인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지 않았다. 혼인은 오로지 가(家)의 유지와 가계계승을 위한 출산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때의 가족은 당연히 공적제도였으며, 한 부부가 출산한 자녀는 개별가족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가문의 구성원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출산과 양육은 가문공동체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공동체의 책임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결혼과 출산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체계론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단위인 가족은 결코 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집단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 체계는 가족, 근접환경, 광역환경이라는 하위체계

로 구성된다. 하나의 체계는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전체로서의 체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 각각의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족과정은 전체체계의 산물이지 개별가족의 산물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결혼을 하락, 출산을 저하와 이혼을 급증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은 개별가족의 문제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현실을 개관하면, 최근 결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과거 결혼적령기에 속한다고 생각되었던 20, 30대 남녀의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록 결혼은 하였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무자녀부부로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증가 속도 또한 만만치 않다. 이미 결혼과 출산은 생활양식에서 필수 또는 의무의 상황이 아니라 선택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족체계론에 입각해서 가족과 사회가 상호작용하여 전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어떤 사회적 지원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과거에 아이들은 혈연공동체 구성원의 위치에서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양육되었음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불과 얼마 계속되지 않았던 핵가족이 가족·친족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던 시절, 개별가족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러한 것이 효율적인 생활양식이 될 수 없음을 곧 알게 되었다. 기혼여성들은 직·간접적인 이유로 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출산후에도 취업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자녀양육의 책임은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다른 대리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모두 해결하기엔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한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부모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그냥 개인적인 일로만 둘 수는 없다.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일차적 책임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출산하므로 인해서

가족정책은 가족체계론에 입각해서
결혼과 출산, 양육이 어떤 사회적 지원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발생하는 비용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게 되리라고 본다. 한편,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공식교육을 받고 기본 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혼부부가 그들의 재산을 분할 할 때 그들의 자녀에게도 분할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느 법조인과 흔쾌히 합의했던 자리에서의 논의가 공식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규정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